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

---

일시 : 2022년 8월 8일(월) 14:00

장소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전소(교육장)

주최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가톨릭환경연대,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의 : 032)433-2122



# 진행순서

진행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구분	진행순서
개회인사	○ 이재혁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제1	○ 전국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발제2	○ 인천 탄소중립조례 제정 방향과 내용 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좌장 : 김진한 (가톨릭환경연대 운영위원 /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1.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위원</li> <li>- 토론2. 강희찬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 교수</li> <li>- 토론3.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li> <li>- 토론4. 손여순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팀장</li> </ul>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및 제안사항</li> <li>○ 강평</li> </ul>
폐회	○ 폐회 및 해산



# 목차

<b>발제</b>	전국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 7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기기획위원
	인천 탄소중립조례 제정 방향과 내용 제언 ... 33 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b>토론</b>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위원 ... 41
	강희찬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 교수 ... 47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55
	손여순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팀장 ... 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

[ 발제 1 ]  
전국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기기획위원



# 전국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2022. 8. 8.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1

## 발표 개요

-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pp.3-17)
-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pp.18-31)
- 시민사회 조례(안) 검토와 탄소중립기본조례 종합 토론 (pp.32-4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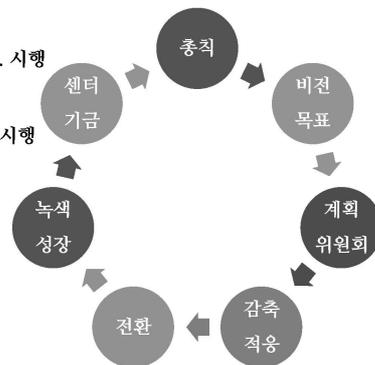
##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구성

- ❖ 제1장 총칙(1~6조)
- ❖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7~9조)
- ❖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10~14조)
- ❖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15~22조)
-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23~36조) \* 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2022.9.25. 시행
-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37~52조)
- ❖ 제7장 정의로운 전환(47~53조) \* 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2022.7.1. 시행
- ❖ 제8장 녹색성장 시책(54~64조) \* 2022.7.1. 시행
-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65~68조) \* 2022.7.1. 시행
-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69~74조) \* 2022.1.1. 시행
- ❖ 제11장 보칙(75~83조)
-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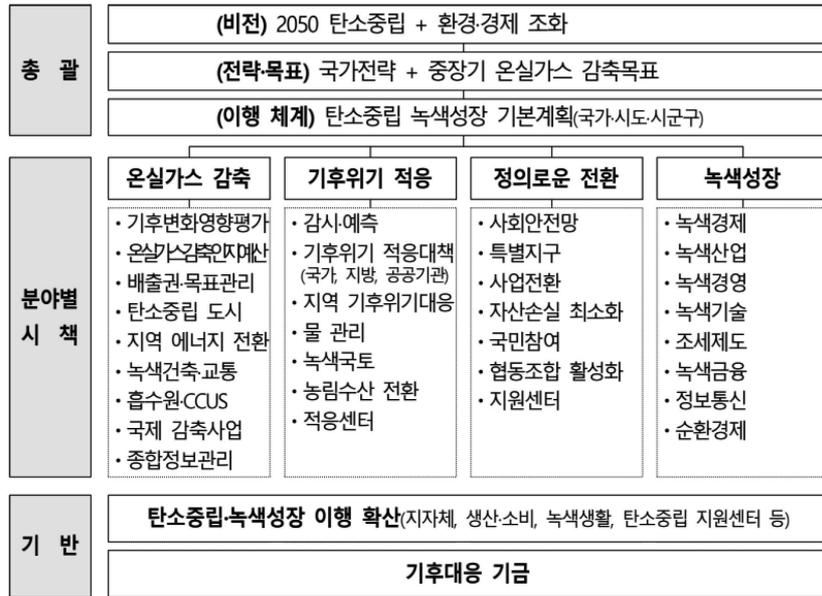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22.1.4. 제정/ 2022.7.5. 시행)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등(제2조 정의)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제23~25조 지속가능발전 시책)



4

##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체계



· 자료: 국무조정실,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2022.3.22)

## 목적과 개념(1~2조)

- ❖ 목적 : 기후위기 대응(감축과 적응), 탄소중립 과정의 불평등 해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녹색성장)
- ❖ 정의(개념)
  - 탄소중립 사회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 기후정의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 녹색성장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 녹색경제 :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 에너지 전환 :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

## 원칙과 책무(3~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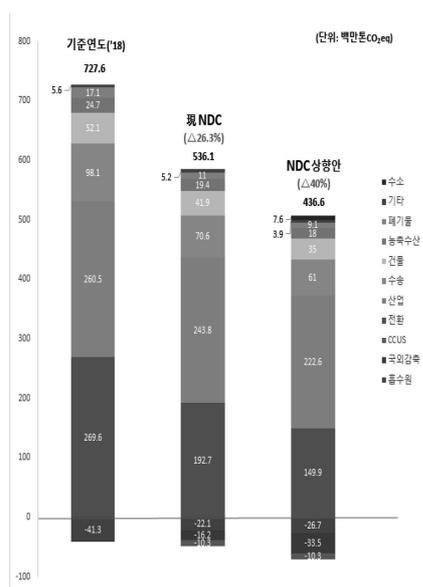
- ❖ 기본원칙
  -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기반
  -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 구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화
- ✓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2조 2항),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7

## 비전과 목표(7~9조)

- ❖ 국가비전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탄소중립 사회 이행, 녹색성장 도모
-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2030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5년마다 재검토, 필요할 경우 진전의 원칙에 따라 변경 혹은 설정 (5년 이전에도 가능)



- ❖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 A안: 배출량 80.4백만톤 - 흡수/제거량 80.4백만톤
  - B안: 배출량 117.3백만톤 - 흡수/제거량 117.3백만톤

·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021.10.18);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성향안(2021.10.1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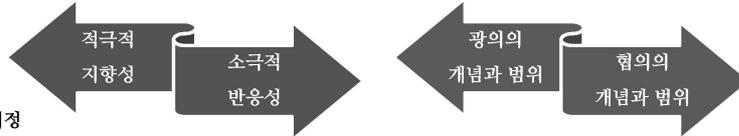
## 정의로운 전환(47~53조)

###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 마련

### ❖ 주요 정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 사업전환 지원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 국민참여 보장 지원
- 협동조합 활성화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지역)전환정책 구상

구분	회고적	전망적
좁은 범위	보상 (피해 손실 금전적 보상)	구조조정 적용 (지원 보조)
넓은 범위	특례 (적용 유예 및 예외 조치)	대안모델 전환 (지원 보조)

\* 자료: Green(2018)

11

## 녹색성장(54~64조)

### ❖ 녹색성장 시책

-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조세 제도 운영,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순환경제의 활성화
  - 조세 제도의 운영의 경우, 기후위기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 운영
  -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의 경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 수립·시행
- ✓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글래스고 기후합의) 관련 쟁점 예상

12

## 확산 방안(65~68조)

-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생산·소비 문화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해야 함. 재화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녹색생활 운동의 경우, 국민의 생산·소비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해야 함
-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69~74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해당 금액,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 수입금 등



13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 ❖ 2030년 감축목표 40% 설정(3조)
- ❖ 기후변화영향평가(15조, 별표2의 계획과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81개 중 28개 대상

분야	에너지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조성 (CO <sub>2</sub> m <sup>2</sup> 이상)	도시개발 (CO <sub>2</sub> m <sup>2</sup> 이상)	도로건설 (2km <sup>2</sup> 이상)	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적용대상 (87개)	에너지시설설치등5개 (신재생에너지·에너지 및 직설배출시설사업제외)	산업단지개발등6개	주택지구조성등13개	도로건설사업1개	공항또는비행장 건설사업1개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2개
적용시기	2022.9.25부터			2023.9.25부터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16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업무 지원
- ❖ 탄소중립도시의 지정(28조),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으로 직접 지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청서 제출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등
- ❖ 고용상태 영향조사(48조), 고용노동부장관 5년마다 정기조사, 피해가 현저한 경우 수시조사 시행
-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49조),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지정기간 2년(연장 가능, 총 5년 초과 불가), 시도지사 신청서 제출 (\* 입법예고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2021.8. 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특구를 지원할 수 있음)
-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53조),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및 고시 기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설립·운영(조례)
  - 국내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지역별·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지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고용·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14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2)

- ❖ 사업전환 지원(50조),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고시 업종 (\* 입법예고 삭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준용)
-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5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래 대상 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시책 수립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50,000tCO<sub>2</sub> eq 이상인 기업이거나 15,000tCO<sub>2</sub> 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 법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5년 계획기간 감축목표 및 연도별 관리목표 협의하여 설정 관리) 기준과 동일)
-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립 및 지정(조례)
  -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72조)
  - 광역: 실장·국장 직급 기준
  - 기초: 실장·국장 직급 또는 실장·과장·담당관 직급 기준



15

## 산업전환과 노동전환 법제 정비(안)

-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2021.4. 출범)

비전과 목표		
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2.0)		
구분	18년	50년(Ne1-zero)
① 친환경 고부가 가치 품목 비중	16.5%	84.1%
② 탄소집약도(탄소배출/부가가치)	496톤CO <sub>2</sub> /백만원	68톤CO <sub>2</sub> /백만원 (△86%)
③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20년 7위)	4강 안착

- 추진방향과 전략**
- ① 탄소중립을 기점으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 ②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중력지원으로 산업계의 부담은 최소화
  - ③ 탄소중립에 따른 소외계층 없이 모두 도약하는 대전환 실현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확산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 확보</li> <li>◇ 기업부담 경감 전략적 정부지원</li> <li>◇ 저탄소 시대 맞춤형 제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에너지 기반 확보</li> <li>◇ 탄소기저 반영 시장 창출</li> <li>◇ 빈틈없는 탄소중립 공급망 관리</li> </ul>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분야 등 성장잠재력화 추진</li> <li>- 저탄소 소비장 : 바이오·이차전지 등</li> <li>- 그린 플랫폼 : 친환경공장 EPC 등</li> <li>- 친환경 인프라 : 수소모빌리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저탄소 혁신</li> <li>◇ 전통산업·인력 선제적 미래전환</li> <li>◇ 지역경제 녹색 균형발전 추진</li> </ul>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계 수요 기반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Agile System) 구축</li> <li>◇ 산업 대전환의 플랫폼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li> </ul>	

\* 자료: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2021.12.10)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021.7)

정책방향: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 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지원 보장								
<table border="1"> <tr> <th>신산업 분야</th> <th>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th> <th>국가 경제</th> </tr> <tr> <td>혁신성장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td> <td>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필요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유망·대체산업 육성</td> <td>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전환 실현</td> </tr> </table>	신산업 분야	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	국가 경제	혁신성장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필요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유망·대체산업 육성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전환 실현	+	
신산업 분야	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	국가 경제						
혁신성장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필요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유망·대체산업 육성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전환 실현						

추진전략: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전략적 대응 + 중립적 지원체계 마련

저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수요가 크고 단기간내 발생 ⇒ 신속 지원</li> <li>→ (기업) 사업재편·전환 지원 + (근로자) 직무전환·전직·재취업 지원 + (지역) 대체산업 육성, 위기지역 신속 지정</li> <li>○ [철강·정유·시멘트 등] 탄소중립 영향 가시화 / 노동전환 수요 중장기적 발생</li> <li>→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li> </ul>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용친화적 디지털화 지원</li> <li>○ (근로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평생직업능력 향상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li> </ul>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중앙단위 거버넌스 및 지역단위 전담체계 구축, \* 법률 제정, \* 사회적 대화

자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021.7)

-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1.9)
-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강은미의원 대표발의, 2021.12)
- ❖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6)



16

## 탄소중립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 규정(요약)

### ❖ 의무규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광역/기초, 법 11~12조, 13조)
- 조례 및 행정계획(위원회 검토, 법 14조)
- 온실가스감축인 예산제도(법 24조)
- 탄소중립 도시(법 29조, 시행령 28조) : 환경부/국토교통부 지정, 지방자치단체 지정 요청 가능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법 36조)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협력(제출 의무)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집행(광역/기초, 법 40조, 42조)
- 의회 보고(법 78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법 79조)

### ❖ 임의규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22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법 48조, 시행령 49조) :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지정, 지방자치단체 지정 요청 가능
-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 및 특례(법 59조)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법 53조, 시행령 53조) :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설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선정 시 도지사 설립 가능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법 65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법 68조)
- 기후대응기금 설치(법 6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법 81조) :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일부의 위임 가능

- ✓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책무 강화, 그러나 권한 및 역량 측면은 쟁점



17

##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18

## 환경부 <탄소중립기본조례>(참고조례안, 2022.3.) 개요

- ❖ 지역에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 검토 중요
- 감축목표, 기본계획, 위원회, 감축 시책 등
- ❖ 지역에서 대폭 보완이 필요한 부분 검토 중요
- 적용 시책, 정의로운 전환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시·도의 책무)
	제4조(시·도민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제12조(위원회의 해촉)
	제13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의)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회의)
	제16조(분과위원회)
	제17조(위원회 사무국)
	제18조(간사)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용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3조(전환경차 보급 확대)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지역 물관리 사업)
	제27조(정의로운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31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부칙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경과조치)
	제4조(적용례)

19

## 환경부,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 IV. 보완사항

- 참고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에서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기는 어려움
  - 또한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똑같이 기술할 경우 법령 개정시 법령과 조례의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지양하였음
  - 따라서 지자체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감축 여건, 기후위기 적응문제 등을 특화하여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봄
- 참고조례안은 각 지자체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역에서는 참고조례안에 얼마든지 않고 지역의 비전과 정책에 따라 조례를 수립하여야 함

### V. 향후 계획

- 환경부는 기존 참고조례안을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임
  - 아울러 각 지역의 조례 입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조례안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검토요청이 있을 때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제1회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연속포럼**

## 지역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조례 제정

**2022.6.7(화) 10:00~12:50**

조례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탄소중립을 탄력적이고 연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사회	한운환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위원		
초청	이유진 녹색연합연구소 부소장	김광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조발제	탄소중립 조례의 역할과 의미	이정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토론 (각10분)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김광현	광주광역시의원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업국장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김영희	병곡시,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무면담연승	장동원	전기유기화학(가)사업부 공동사업위원
	시안결정을 보장하는 탄소중립 조례제정	김동주	한국사상교육진흥원의장(안원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울환경 기후위기 대응 및 기업 일자-문명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차승연	서울특별시 서울환경연구소 부소장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송인준	환경부 기후정책과 사무관
	탄소중립 관련 조례 발제도 개선사항	최광훈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동행토론 및 질의응답</b>			

주최 및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20

##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광역시	현황	기초	현황
1	서울	-	6	도봉구, 서대문구, 구로구, 성동구, 은평구, 동대문구
2	인천	-	-	-
3	대전	-	1	서구
4	광주	○	-	-
5	부산	○	-	-
6	울산	○	-	-
7	대구	○	3	북구, 수성구, 달서구
8	세종	○	-	-
9	경기	○	5	평택시, 하남시,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10	충남	○	1	태안군
11	충북	-	-	-
12	전남	○	1	여수시
13	전북	○	1	전주시
14	경남	○	-	-
15	경북	-	-	-
16	강원	○	2	속초시, 원주시
17	제주	-	-	-
합계		11	20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2022.7.31. 검색 기준(이의 입법예고 조례 존재)

21

## 광역시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1.12. 제정)
- ✓ 탄소중립 지원센터 조항 신설(2022.5.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제정)
-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2022.4. 제정)
-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6. 제정)
-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6. 제정)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2.7.제정)
-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7. 제정)
-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2.7. 제정)
-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7. 제정)

22

## 광역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약평

- ❖ 조례의 핵심 조항 포함 여부 및 적절성 평가
- 향후 체계적 분석 필요(감축/적용 시책 등 포함)
- 전반적으로 환경부 참고조례안 의존도 높은 편
- 광주 기본조례 긍정적 평가, 충남과 같이 유관조례 포함 종합 검토 중요

	30년 목표 (탄소중립)	기본계획	위원회	정의 전환	녹색성장	감축시책	적용시책	지원조직	기금	유관 조례
충청	—	▽	○	—	△	▽	▽	—	—	전환기금 전환지원
세종	—	○	○	—	△	▽	▽	○	—	—
광주	40%~ (45년중립)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기후기금
강원	— (40년중립)	○	○	▽	△	○	▽	○	○	—
대구	—	△	△	▽	△	○	▽	○	○	—
부산	—	△	○	▽	△	○	▽	○	○	—
경남	—	○	○	—	▽	▽	▽	○	—	—
경기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주: ○(상), △(중), ▽(하) - (해당 없음)

23

## 광역 지방정부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1.2. 제정)
  -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2022.4. 제정)
  - 지원계획 수립(매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 설치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심의·자문기구, 민간 15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2021.7. 제정)
  - 종합계획, 사업지원 등
-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2.3. 제정)
  - 기금 및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2022.5. 개정)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항, 탄소중립위원회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2022.1. 제정)
  - 기본계획, 추진위원회 등
  - cf.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2010. 11. 제정)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2021.12. 제정)
  -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등(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 포함)

24

##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9. 제정)
-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2021.11. 제정)
-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1.12. 제정)
-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1.12. 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12. 제정)
-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12. 제정)
-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2.2. 제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2.2. 제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3. 제정)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2022.4. 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제정)
-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제정)
-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6. 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2.7. 제정)
-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7. 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7. 제정)



25

##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약평 (1)

	30년 목표	기본계획	위원회	정의 전환	녹색성장	감축시책	적용시책	지원조직	기금	유관 조례
서울 도봉구	—	▽	—	—	—	△	▽	—	—	녹색성장 기후기금
충남 태안군	—	▽	—	—	—	△	▽	—	—	녹색성장 전환협의
대전 서구	35%~	△	△	—	▽	△	▽	○	—	—
경기 광명시	—	○	▽	▽	▽	▽	▽	—	▽	—
서울 서대문구	35%~	○	△	▽	▽	△	▽	○	○	—
대구 북구	—	▽	—	—	—	△	▽	—	—	—
경기 하남시	—	○	▽	▽	▽	▽	▽	○	○	—
대구 수성구	—	△	—	—	—	—	▽	—	—	—
서울 구로구	—	○	○	△	▽	○	○	○	—	기후기금
경기 과천시	—	○	○	—	—	△	▽	—	—	탄소인지

\* 주: ○(상), △(중), ▽(하) - (해당 없음)



26

##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약평 (2)

	30년 목표	기본계획	위원회	정의 전환	녹색성장	감축시책	적용시책	지원조직	기금	유관 조례
대구 달서구	—	△	○	—	▽	△	▽	○	—	—
전남 여수시	—	▽	—	△	—	△	▽	—	—	마을조성
강원 속초시	—	○	○	—	▽	△	○	○	—	—
서울 성동구	—	○	○	—	—	△	△	—	—	—
경기 성남시	40%~	△	○	—	—	△	▽	○	○	—
강원 원주시	—	△	○	—	—	△	▽	○	○	—
전북 전주시	—	○	○	—	—	△	△	○	○	—
서울 은평구	—	○	○	—	—	△	△	—	—	—
경기 고양시	—	○	△	△	—	○	○	○	○	시민지원
서울 동대문구	—	○	○	—	—	△	▽	○	○	—

\* 주: ○(상), △(중), ▽(하) - (해당 없음)



27

##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 (1)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3. 제정)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의 구성 및 지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9. 제정)
  - 탄소중립 추진/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공정한 전환 도모 위해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1.4. 제정)
  -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영향평가, 운영위원회(자문기구, ~15명),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1.12 제정)
  -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영향평가, 운영위원회(자문기구, ~15명),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2.2 제정)
  -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운영위원회(자문기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대행),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28

##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 (2)

-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2021.11. 개정)
  -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신설)
-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2.2. 제정)
  -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정의로운 전환 규정, 협의회(~20명,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2021.7. 개정)
  - 기본계획, 행정협의체, 심의위원회, 읍면동 추진위원회, 지원센터 등,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개정
- <여주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2022.4. 제정)
  - 기본계획, 행정협의체, 심의위원회, 읍면동 추진위원회, 지원센터 등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6. 개정)
  - 존속기한 2026년까지 5년 연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11. 개정)
  - 존속기한 2026년까지 5년 연장



29

##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1~6조)
- ❖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7~11조) : 2045년 탄소중립, 2030년 40% 이상 감축(2018년 대비), 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 ❖ 제3장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등(12~19조) :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연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20~ 30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공공부문 목표관리,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탄소중립도시 추진, 에너지 전환 시책의 추진,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 확충, 자원순환 활성화, 녹색식생활 활성화,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 ❖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31~ 37조) :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 구축 등,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축산의 전환 촉진, 시민 건강관리
- ❖ 제6장 정의로운 전환 등(38~45조)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사업전환 지원,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지역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등
- ❖ 제7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46~51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탄소중립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협력체계의 구축,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 성과관리
- ❖ 제8장 기후대응기금 등(52~56조) : 광주광역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의회 보고 등, 탄소중립백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30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현황  
(2022.3. 기준)

시도	1) 도입 예산명	2) 도입 유무 (O/△/X)	3) 도입 단계(✓)				4) 향후 도입 예상시기
			① 사전 검토	② 도입 계획 수립	③ 시범 도입	④ 전면 도입	
서울	기후예산제	△		✓			2023년도
부산	미정(담당부서미결정)	X					
대구	미정(담당부서미결정)	X					
인천	미정	X					행안부 지침 이후 고려
광주	미정 (정부 명칭과 동일 예상)	△	✓ (분류직업 정도)				2023년도
	미정	X					
대전	탄소인지예산제 (대덕구)	O				✓ (2022년도)	
울산	미정	X					
세종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용역)				2023년도
경기	탄소인지예산제	△	✓ (체크리스트작성)				2023년도
강원	미정	X	✓				
충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용역)				2023년도 (시범운영예정)
충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내부 구상 중)				2023년 이후 (2023년도까지 도입 준비예정)
전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용역)				2023년도
전남	미정	△	✓ (조례 정비)				2023년도
경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예정)	△	✓				2023년도
경남	기후인지예산	O			✓ (2022년도)		지방재정법 개정 후 도입 검토 예정
제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용역 예정)				2023년도

•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온실  
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방향, 지방자치 정책 브  
리프 147, 2022.

시민사회 조례(안) 검토와 탄소중립기본조례 종합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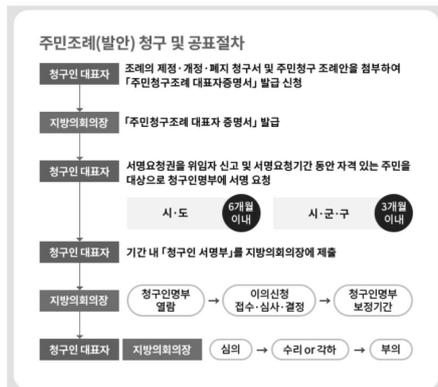
##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 경과

-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 / <경기도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
- ❖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시민안) 작성 경과
  - 2021.09.26. <도 조례(시민안)> 초안 작성
  - 2021.10.01.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TF 기획회의, 조례 초안 1차 검토
  - 2021.10.14.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TF 기획회의, 조례 초안 2차 검토
  - 2021.11.02.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TF 기획회의, 조례 보완
  - 2021.11.23.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 시민안 공청회 개최
  - 2021.12.09.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2021.12.17.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TF 기획회의, <도 조례(시민안)> 확정/배포 및 향후 과제 논의(조례제정 운동 등)
  - 2022.01.27. <시·군 기본조례(시민안)> 작성
  - 2022.02.22.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시민안) 작성
  - 2022.04.21.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주민발안 운동 선포(경기도 및 수원, 고양, 남양주, 안성, 안산, 안양, 의정부 등)
  - 2022.04~06. 도내 시·군별 지역단체 간담회와 시민설명회 개최
  - 2022.05.20.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의원발의 입법예고)
  - 2022.05.26. 주민e직접 청구서 제출,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 시스템 애러 발생으로 지연
  - 2022.07. <개정안> 주민조례 청구 예정
- ❖ 녹색당 <OO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2022.3.17.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운동본부, 조례안 공청회 개최
  - 2022.4.11.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 발표 기자회견
- ❖ 민주노총 <OO/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2022.5.17.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의 과제 토론회



## 최근 주민조례 발안(청구) 사례(2022년)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서명기간 1.4.~4.26.)
-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서명기간 1.17.~8.23.)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서명기간 4.1~8.3.)
  - 송파기후행동,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 등 참고하여 작성
  - 제40조(기후위기를 심화하는 광고 금지) 추가 특장



주민e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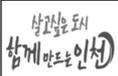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자치단체	청구일	서명기간	주민총수	필요 서명수	현재 서명수	청구인의 대표자
서울특별시송파구	2022.04.01	-2022.08.03	564,938	5,650	1	이승희

청주시제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제출  
 대전광역시제출  
 충청남도제출  
 충청북도제출  
 경상남도제출  
 경상북도제출  
 강원도제출  
 충청권제출  
 광주광역시제출

\* 자료: 주민e직접(juminegov.go.kr)



		<b>보도자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13일(목) 총 3매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자	* 법제팀장 강희환 ☎440-2281 * 담당자 김수연 ☎440-2285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7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법률 시행 전후의 인천광역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

연령	총구권자 주민총수	내국인	외국인	연서 주민수	비고
18세 이상	2,524,520	2,514,054	10,466	12,623 (1,200 이상)	22.13.부처시행
19세 이상	2,496,081	2,485,641	10,440	29,366 (1,88 이상)	22.12.까지시행

(통계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주소복사 본문내용새 저장 인쇄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 등)
- 제5조(대표자명명서 발급 등)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 제7조(청구인명부)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 제9조(공표방법)
- 제10조(이의신청)
- 제11조(보정기간)
- 제12조(사무의 위탁)
- 제13조(사무협조)
- 부칙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30 조례 제 67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명명서의 발급신청서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 취지**

-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자치 법규 마련
-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위임사항 반영
- ❖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조례(시민안)의 연계성 확보 및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 고려
-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 시민·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숙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공론장 활성화(주민조례청구 등)
- ❖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및 합의사항 반영
- ❖ 조례 구성 및 내용의 특징과 한계
  -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 반영, 1) 기후위기대응(감축·적응), 2) 탄소중립 과정의 불평등 해소, 3)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연계성 확보 및 포괄적 범위 유지
  -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접근 강조, 그러나 그 구성과 수단은 지방정부의 사무범위 등 지방자치권의 한계 고려
  - 주민 권리,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해당사자 참여 거버넌스 강조
  -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녹색일자리를 조향으로 축소 조정
  - 타 지역에서 경기도 및 시·군 조례(시민안) 활용(수정·보완) 기대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 변경) 등 실정법(제약)



## [참고] 합의제 행정기구

- ❖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법> 등)
  - ex. 서울시감사위원회, 시민감사유무조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ex. 2021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 후 시민협력국 담당
- ❖ 거버넌스 형태의 (부분) 독립적 행정기구(위원회 심의 기능 + 행정부서의 기능 결합)
- ❖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구)의 조직 구성 필요
  - 총괄기획 담당관, 정책사업 담당관, 도민참여 담당관, 운영지원 담당관(예시)
-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도(예시)
  - 구 성 : 1위원회 4담당관 16팀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 개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도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비전)
	제9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제12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3조(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제14조(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6조(회의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및 도민정책참여단, 사무국 등)
	제18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제2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1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제22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5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제2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29조(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제30조(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제31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32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33조(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제34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제35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제36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37조(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38조(녹색경제·녹색일거리의 육성·지원)
	제39조(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40조(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4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42조(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참여)
제8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4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44조(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
9장 보칙	제4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46조(기금의 용도)
부칙	제47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제4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9조(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경과조치)

\* 주: 2022.5.10. 기준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1~7조) : 도민의 권리와 책무
- ❖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8~10조) :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2018년 대비 50% 이상 하한선 설정
- ❖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11~13조) : 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 ❖ 제4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등(14~17조) : 분과위원회·도민정책참여단·사무국의 설치
- ❖ 제4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등(14~17조) : 심의·의결 기구 (\* '합의제 행정기구' 삭제)
-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18~27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순환경제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28~34조)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농업수산의 전환 촉진 등, 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 ❖ 제7장 정의로운 전환(35~44조) : 정의로운 전환대책의 수립·시행,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지원, 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
- ❖ 제8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45~46조)
- ❖ 제9장 보칙(47~49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39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주요 특징

- ❖ 녹색당 <OO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특징
  - 강행규정 및 주민참여 적극 활용
  - 기후변화영향평가(주민투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 시행, 기후정의예산 확보(최소 20%), 20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해 3%의 그린리모델링 추진/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 의무규정, 위반의 경우(주민소환) 등
- ❖ 민주당총 <OO/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특징
  - 노동 부문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 방안 명시
  - 노사교섭, 노정교섭, 작업증지권, 임금보전, 지역공기업 통한 고용유지 및 공공성 담보(에너지, 교통, 폐기물 분야) 등



40

##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종합토론

### ❖ 환경부 참고조례안의 의미

- “각 지역에서 조례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참고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과제 제안

-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의 자치권이 제한된 지방자치의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기후정의 기본조례 제정(또는 개정)을 포함한 자치법규 마련 중요. 기본조례 이외 유관 개별조례 포함 자치법규 일괄정비도 중요
- 지역의 특징, 여건과 지향을 반영하는 논의 필요.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쟁점 발생은 당연. 쟁점 확인과 종합 토론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합의 과정(공론화) 추구 필수
- 기본조례이나 개별조례에 반영할 새로운 아이디어 적극 발굴 및 채택(건강권 보장, 채식선택권 보장, 탈화석연료 금과 지정, 기후위기 심화 광고 규제 등) ex. 에너지기본조례 → 주민참여, 지구지정, 이익공유, 에너지복지 등
- 도시계획(조례-위원회) 등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등 탄소중립 기본조례 및 기본계획의 위상 강화 노력 필수
- 지방의 책무와 함께 단체자치 및 주민자치의 권한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제안 병행(자치·분권 이슈 연계)
- <학교급식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사례처럼, 아래로부터/지역으로부터 촉발된 조례제정 운동의 성과와 교훈을 탄소중립/기후정의 기본조례의 제·개정에 적용 필요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기후변화대응조례가 있어도 기후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41

## [참고] 에너지기본조례 이외 에너지 자치법규 제정 현황

구분	주요 조례
주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2019.6.18. 제정)</li> <li>•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2020.1.9. 제정)</li> <li>•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2021.4.20. 제정)</li> <li>•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2022.8.1. 제정)</li> </ul>
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1.10.12. 제정)</li> <li>•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2021.9.30. 제정)</li> <li>•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9.29. 제정)</li> <li>•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1.2.10. 제정)</li> <li>•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2021.8.10. 제정)</li> <li>•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11.5. 제정)</li> <li>• 용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2022.1.7. 제정)</li> </ul>
이익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2016.7.8. 제정)</li> <li>•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2020.4.2. 제정)</li> <li>•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2021.9.30. 제정)</li> <li>•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7.11.27. 제정)</li> <li>•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2018.10.5. 제정)</li> <li>•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2019.11.15. 제정)</li> <li>•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2020.5.29. 제정)</li> <li>•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2021.10.1. 제정)</li> <li>•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2021.11.15. 제정)</li> </ul>

42

##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체계 검토

❖ 현행 체계 검토 및 쟁점 확인 후 개선 과제 도출

	현행 체계 검토 및 쟁점 확인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방향
1	정책연계/통합 방안 및 행정부서 개편	
2	탄소중립위원회 및 이행점검 방안	
3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에너지센터 등 고려)	
4	탄소중립 사회적 협약	
5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6	주민조직/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원(의사결정과 사업참여)	
7	교육/홍보/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체계 활성화	
8	시민참여 정보플랫폼/툴킷 구축 및 공개	
9	탄소인지예산/기후영향평가 도입	
10	예산/기금 등 재원 마련	
11	광역-기초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12	탄소중립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일괄정비	
13	탄소중립 자치/분권 요구사항 마련	
14	추가	



43

## [참고] 인천시 자치법규 현황

소관업무별 자치법규	현행 자치법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기타
현행법규	747	179	77	32	0
폐지된법규	758	287	54	21	0

소관업무

해당지역 자치법규 목록

의회사무처	대변인	감사관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b>환경국</b>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복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자치경...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clis.go.kr), 2022.7.31. 검색 기준



44

####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개정일 2016-12-26] [조례 제5740호, 공포일 2016-12-26]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일 2022-02-24] [조례 제6801호, 공포일 2022-02-24]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개정일 2021-12-30] [조례 제6757호, 공포일 2021-12-30]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유해아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개정일 2019-12-30] [조례 제6318호, 공포일 2019-12-30]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개정일 2016-11-14] [조례 제5722호, 공포일 2016-11-14]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개정일 2022-04-21] [조례 제6846호, 공포일 2022-04-21]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개정일 2021-06-24] [조례 제6634호, 공포일 2021-06-24]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개정일 2019-06-21] [조례 제6195호, 공포일 2019-06-21]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 기본 조례 [제·개정일 2021-11-08] [조례 제6722호, 공포일 2021-11-08]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개정일 2021-12-30] [조례 제6757호, 공포일 2021-12-30]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개정일 2014-05-26] [조례 제5383호, 공포일 2014-05-26]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일 2021-11-08] [조례 제6723호, 공포일 2021-11-08]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개정일 2018-04-23] [조례 제5966호, 공포일 2018-04-23]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개정일 2016-07-11] [규칙 제2994호, 공포일 2016-07-11]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제·개정일 2016-11-14] [조례 제5722호, 공포일 2016-11-14]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일 2020-02-26] [조례 제6337호, 공포일 2020-02-26]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제·개정일 2021-09-30] [조례 제6689호, 공포일 2021-09-30]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일 2022-02-24] [조례 제6801호, 공포일 2022-02-24]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개정일 2021-12-30] [조례 제6777호, 공포일 2021-12-30]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개정일 2021-06-04] [조례 제6620호, 공포일 2021-06-04]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제·개정일 2015-12-28] [조례 제5600호, 공포일 2015-12-28]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개정일 2022-04-21] [조례 제6849호, 공포일 2022-04-21]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중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제·개정일 2016-02-22] [조례 제5633호, 공포일 2016-02-22]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개정일 2015-07-27] [규칙 제2945호, 공포일 2015-07-27]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

[ 발제 2 ]  
인천 탄소중립조례 제정 방향과  
내용 제언

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인천 탄소중립조례 제정 방향과 내용 제언

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IPCC 48차 1.5°C 특별보고서는 인천 송도에서 채택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가 지켜보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작년 제정되어 올해 7월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인천시는 향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여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민·관·기업 협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법령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발빠르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개 환경부의 참고 조례안에 의존하여 제정되었는데, 참고 조례안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며 시민사회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참고 조례안을 두고 각 지역에서 조례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후위기 행동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경기도 시민사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을 준비하여 주민발의 입법운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참고조례안으로는 UN이 권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 50% 이상 감축(2018년 대비) 달성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이행과정에서의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 권리,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해당사자 참여 거버넌스를 강조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였다.

경기도 시민사회처럼 인천에서도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 조례 입법의 공론화와 활발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실효성 있게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환경부의 참고 조례안에 따라 일부 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한 내용이다.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1)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명시해야 하고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책임과 수단을 마련하고 3) 거버넌스 위원회 기구를 확대하여 실효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4)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더불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국가의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를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인천시 자체 목표 설정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되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해 35% 하한선이 설정되었고, 국가 2030 NDC에 40%로 설정되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소한 국가수준 이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35% 하한선 설정을 제안한다.

조례(안)	제안
<p><b>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b></p> <p>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p> <p><b>③(추가)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p> <p>④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 2.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의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조항(환경부 참고 조례안 제8조)이 누락 되어 있다.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행현황의 점검과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목표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매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개선의견 시정 반영, 구·군 지원 시책 반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례(안)	제안
없음	<p><b>제8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b></p> <p>①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근거: 환경부 참고조례안)</p> <p>②(추가) 위원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③(추가)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 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④(추가)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구·군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3. 거버넌스 기구 확대, 위상과 권한 강화

조례안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은 30명 내외인데, 기후위기 당사자인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위원을 추가하여 40명 내외로 확대 제안한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명시된 ‘인천민관공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40명 내외로 되어있다.

조례(안)	제안
<p><b>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일자리·교통·건물·에너지·환경분야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p> <p>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b>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b>40명</b>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일자리·교통·건물·에너지·환경분야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b>3.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b></p> <p>④ <b>제3항 제3호에 따라</b>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p>

	<p>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수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	--

위원회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소집 기준을 완화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제출 요구와 현지조사, 이해관계인·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조례(안)	제안
<p><b>제13조(위원회의 회의)</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p><b>제13조(위원회의 회의)</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b>4분의 1 이상</b>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p> <p>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p> <p>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p> <p>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p> <p>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인 사무국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참고 조례안에는 사무국(사무국장 1명, 필요한 직원)을 두거나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임명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국만이 아닌

도시계획, 도로, 교통건설, 자원순환, 경제산업, 도시재생녹지, 해양항공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시장 및 행정부시장 직속의 사무국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조례(안)	제안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 4.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환경국 국장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맡기보다 여러 국을 관장할 수 있는 역할의 공무원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조례(안)	제안
제35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시장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5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시장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5.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더불어 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을 포함해야 한다.

조례(안)	제안
없음	(조항 추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시장은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 (근거: 환경부 참고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

[ 토론 1 ]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위원



# 인천 탄소중립조례 제정 방향 토론회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장시정

인천시가 준비 중인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정부 표준안에 의지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우리 정부의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은 UN이 권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표준안에 의지해 준비 중인 인천시의 탄소중립조례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은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인천시의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시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조례안에는 그런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후정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연계시키거나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법에 따라 지역별 기후변화 피해 규모나 특성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 인천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거나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나 시민참여 방안도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례가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 없이 환경부 표준안에 의지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시민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제정되는 조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 1.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부담과 이익을 나누는 기후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2조)”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본원칙에 정의로운 전환은 있지만 기후정의의 원칙은 사라졌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책임져야 할 몫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부담과 이익을 나누는 기후정의를 강조한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은 인천지역 내외, 세대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시의 주요 업무인 재난대응과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인천시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 2. 구체적인 2030년 감축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국가의 감축목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감축목표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인천시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진전된 목표는 아니더라도 지역, 세대 등 책임에 입각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조례안에 들어가야 한다. 조례에 명시된 구체적인 감축 목표안을 통해 인천시의 에너지, 교통, 건축, 폐기물, 지역경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 3.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조례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탄소중립 조례 제정과정과 조례가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 합의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협치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입각해 다양한 기후위기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까지 과정에서 보완되고 강화된 형식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4. 인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으로 위기에 처한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한다. 발전사, 전력소비가 많은 제철소, 내연기관, 제조업 등이며, 이러한 산업군의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위기에 내몰릴 이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탄소흡수원 확대에 따른 개발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규제 수단이 있지만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례에서 불가피하고 훼손된 탄소흡수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산림’을 명시하

고 있다.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갯벌과 해양생태계 또한 탄소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과 오염으로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또한 추가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

[ 토론 2 ]

**강희찬**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 교수



# 토론문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 강희찬 교수

- 인천시는 태양광, 지열 등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기금을 마련을 통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

조례(案)	변경 제안
<p>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b>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b>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b>② (추가)</b>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을 위해 민간이나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b>③ (추가)</b>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관련 기금을 예산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p> <p><b>④</b>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 인천시는 신축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의 확대를 촉진하고, 기존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적시할 필요.
- 가정과 소형상업시설에 대한 지능형 계량기와 대형건축물과 공장시설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적시할 필요.

조례(案)	변경 제안
<p>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추가) 시장은 신축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촉진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p> <p>③ (추가) 시장은 신축 및 계속되는 건물에 대한 지능형 계량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부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향후 충전소 설치 예측관 이에 따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충전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에 추가하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할 것임.

조례(案)	변경 제안
<p>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추가) 시장은 향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확대 추이에 따른 급속 및 완속 충전소 설치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 내 혹은 외부 단독 충전소 설치비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온실가스 정보 통계 분석, 검증,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정 필요.
- 산업, 운송, 에너지, 폐기물, 건물 등의 명확하고 투명한 온실가스 정보 획득을 위한 명확한 규정 확립 및 협조 요구 필요.

조례(案)	변경 제안
<p>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추가)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와 통계를 분석·검증·작성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p> <p>② (추가) 시장은 시의 산업, 해양운송, 도로운송, 에너지, 폐기물, 건물, 흡수원 등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온실가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산업단체, 공단 협회 등에 자료를 요구하고, 협의해야 한다.</p> <p>③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기후취약지역 지도 작성 필요.
-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조례(案)	변경 제안
<p>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시장은 법 제 40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시장은 법 제 40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추가) 시장은 기후취약지역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p>

- 녹색생활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보 및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앱 등 인천시 녹색생활 인터넷 플랫폼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조례(案)	변경 제안
<p>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p> <p>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p>	<p>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p> <p>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④ (추가)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생활 촉진 인센티브, 녹색생활 관련 정책 홍보 및 소통, 시민의 녹색생활 아이디어 발굴, 녹색생활 실천가이드 라인, 기상재해 대비 방법 및 애로사항 소통 등을 담은 인터넷 플랫폼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

[ 토론 3 ]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MEMO

# MEMO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

## [ 토론 4 ]

**손여순**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팀장



# MEMO

# MEMO